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1 ~ 35
----------	-----------

제출연월일 : 2001. 10.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개정이유

- 문화복지센터 기구·인력 보강 승인에 따른 기구설치 및 관련업무를 조정하기 위함

주요골자

- 기구폐지 및 설치
 - 폐 지 :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
 - 설 치 : 거창군문화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및 박물관을 문화복지센터로 통합
- 업무조정
 - 재가복지사업 : 복지관 ⇒ 사회복지과

개정근거

- 신규사업·시설에 대한 기구·인력보강 승인
: 경상남도 행정 12200 ~ 11622 (2001. 9. 14)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중 “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재가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중 “별표2”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문화복지센터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예술활동 공간 및 공공행사의 편의를 제공하고, 저소득 계층의 자활·자립 능력을 배양하는 등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거창군문화복지센터소장

- 가.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
- 나.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 다. 각종 학술 세미나, 교육, 행사 유치
- 라. 저소득 세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부업훈련
- 마. 부녀자의 교양교육, 취미교실 운영 등 건전가정 육성사업
- 바. 청소년 기능교육, 취미교육, 독서실 운영 및 사회교육
- 사. 주민 사회교육 및 각종회의 행사, 여가선용시설 제공
- 아. 향토문화재의 수집·보존과 공개관람
- 자. 문화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박물관 운영
- 차. 기타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제2항및제3항, 제8조, 제9조제5호,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 “관장”을 각각 “소장”으로 한다.

②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중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례 제7조, 제11조의2, 제13조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14조중 관장을 소장으로 하고, 별지제2호, 제3호 및 제4호 서식중 “결재”란의 실장을 소장으로, 관장을 담당으로 한다.

제5조 (명예관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는 박물관 운영에 조예가 깊은 사계 권위자를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명예관장은 무보수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실·과·지원단의 설치)</p> <p>① ~ ② (생략)</p> <p>1. ~ 5 (생략)</p> <p>6. 사회복지과</p> <p>가. ~ 라. (생략)</p> <p><u><신 설></u></p> <p><u>마. 위생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u></p> <p>7. ~ 12. (생략)</p> <p>제13조 (설치)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및위치는 <u>별표2</u> 와같다</p> <p>제14조 (목적) ① (생략)</p> <p>② <u>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 계층의 자활,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4조(실·과·지원단의 설치)</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사회복지과</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u>마. 재가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u></p> <p><u>바. (현행 마목과 같음)</u></p> <p>7. ~ 12. (현행과 같음)</p> <p>제13조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u>별표2</u>.....</p> <p>제14조 (목적)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문화복지센터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예술활동 공간 및 공공행사의 편의를 제공하고, 저소득 계층의 자활·자립 능력을 배양하는 등 지역사회 종합적인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u></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 (소관사무) (생 략)</p> <p>1. (생 략)</p> <p>2. <u>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장</u></p> <p>가. 저소득 세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u>부업 훈련</u></p> <p>나. <u>결손, 빈곤가정의 가정문제 상담</u></p> <p>다. <u>부녀자의 교양교육, 취미교실 운영등</u> <u>건전가정 육성사업</u></p> <p>라. <u>어린이 기능교실, 예절교실, 심신 단련</u> <u>등 건전한 성장발달 도모사업</u></p> <p>마. <u>청소년 문제의 상담, 교양교육, 레크레</u> <u>이션 등 전인적 인격형성 유도</u></p> <p>바. <u>청소년 기능교육, 취미교육, 독서실 운</u> <u>영 및 사회교육</u></p> <p>사. <u>노인 사회교육 및 건전한 여가지도</u></p> <p>아. <u>심신장애인 상담 및 서비스 사업</u></p> <p>자. <u>주민 사회교육 및 각종회의 행사, 여가</u> <u>선용시설 제공</u></p> <p>차. <u>주민복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원 봉</u> <u>사자 육성</u></p> <p>카. <u>기타 사회복지를 위한 종합서비스 업</u> <u>무</u></p>	<p>제16조 (소관사무)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거창군문화복지센터소장</u></p> <p>가. <u>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u> <u>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예</u> <u>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u> <u>전시</u></p> <p>나. <u>주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u> <u>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u> <u>전시</u></p> <p>다. <u>각종 학술 세미나, 교육, 행사 유치</u></p> <p>라. <u>저소득 세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u> <u>부업훈련</u></p> <p>마. <u>부녀자의 교양교육, 취미교실 운영</u> <u>등 건전가정 육성사업</u></p> <p>바. <u>청소년 기능교육, 취미교육, 독서실</u> <u>운영 및 사회교육</u></p> <p>사. <u>주민 사회교육 및 각종회의 행사,</u> <u>여가선용시설 제공</u></p> <p>아. <u>향토문화재의 수집·보존과 공개관</u> <u>람</u></p> <p>자. <u>문화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박물관</u> <u>운영</u></p> <p>차. <u>기타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에 관한</u> <u>사항</u></p>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3조 관련)

사업소명	위치
거창군수도사업소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239-50
거창군문화복지센터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16-5
거창군수송대관리사무소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750-3